

# 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 & 보건증검사 신청서

FAX) 02-6442-4969



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신청대상 :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

신청마감 : 해당 외국인 입국 전 날까지 **입금이 완료**되어야 합니다.

제출방법 : 팩스전송 FAX) 02-6442-4969



검사비 입금

**중요!** 입금자명: **신청업체명 기재**

금액 : ₩ 40,000 (1인 당)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47-05-002503 (사)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  
보건증 별도 신청시 추가금 발생 : ₩ 9,000 (1인 당) / 근로자의 보건증이 필요한 사업장만 신청 바랍니다.



완료

신청서와 입금 확인 후 예약 확정 문자가 전송됩니다.

1. 전자계산서(면세) 발행 시, **반드시 이메일을 기재하십시오.** 누락 시 **추후 발행 불가**합니다.

2. 전자계산서(면세) **발행 후 꼭 승인 하십시오.** 미승인 시, **다음 달** 국세청에서 일괄 전송됩니다.

검사결과

1. 검진 전날까지 입금 확인 시에만, 검진 다음 날 법무부로 일괄 통보됩니다.

2. 단체검사 신청 시, 별도 검사 결과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
3. 출입국관리소 전산으로 자동 통보됩니다.

문 의

02-537-3583 외국인 마약 검진 부서

상담가능시간 08:30~15:30 점심시간 12:40 ~ 13:40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업체명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성명  |                 |
| 업체 전화번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연락처 |                 |
| 업체 주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 등록 번호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업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종목      | *업태 세부 종목 기록 기재 |
| 전자계산서<br>이메일주소 | *누락 시 추후 발행 불가 합니다.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환불 받을 계좌       | *은행/계좌번호/예금주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아래 외국인 근로자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내드린 '입국안내 자료'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.

|   | 외국인 근로자 성명 | 국적 | 성별 | 입국일 | 보건증 신청여부<br>(V표시 요함) |
|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2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3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4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5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2012년 8월부터 "외국인 마약검사 확인서 징구정책" 에 따라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

상기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기간 중 마약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: (인)